

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9. 1. 김태훈 의원 외 4인
2. 건명 :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로붙임
4. 검토의견 : 따로붙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9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 
전문위원 연 정 수

#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9월 1일 김태훈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1. 개정이유

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의 3)

### 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60%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구청장에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토록 권고하고
- 권고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- 학교 주차장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등 건설사업 지원과 관련한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특히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한 학교장과의 협조 그리고 시·구간 유기적인 협력이 선행되어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